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1 제 정 이 유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98. 2. 24)됨에 따라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제2조)
-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제3조)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게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제4조)
-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3 검 토 의 건

- 이 조례제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본청,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 단위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청과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2 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협의회는 가입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에 상당한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감사, 보안, 경비, 운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하도록 하였음.
- 협의회는 대표자 포함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였음.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단결체가 아닌 협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로 볼수 있음.
-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임용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수행상 공공성·공정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 관계에 있고, 근로3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직무성질에 따른 공공성, 국가현실, 사회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운영은 제한적이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장 내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되도록 스스로 활성화에 노력해야 된다고 봄.